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소방공무원승진임용규정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장관)
제출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공무로 순직하여 특별승진한 공무원 유족에게 특별승진한 계급으로 급여를 지급하도록 「공무원 재해 보상법」이 개정됨에 따라 순직자의 특별승진 요건을 강화하면서, 위험직무 순직 외에 일반 순직자도 재직중 뚜렷한 공적이 인정되면 특별승진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가. 일반순직 및 위험직무순직자의 재직중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 특별승진이 가능하도록 규정 개정(안 제38조제1항제5호, 안 제38조제2항)
- 나. 공무로 사망한 공무원의 특별승진을 위한 재직 중 특별한 공적 심사를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하도록 개정(안 제42조제1항, 안 제42조제3항)
- 다. 일반순직 또는 위험직무순직자의 특별한 공적 등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특별승진임용을 취소 하는 규정 마련(안 제41조의2제3항)
- 라. 재난현장에서 공무 중 사망하는 등 특별승진임용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 先 임용 後 심사를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안 제42조제4항)
- 마. 일반순직 및 위험직무순직자에 대한 특별승진 임용을 위한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특례 절차 마련(안 제18조의2)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의 특례) ①제18조에도 불구하고 제38조제1항제5호 및 같은조 제2항에 따른 특별승진대상자에 대하여 심사를 하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과반수를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

1. 승진심사대상자보다 상위계급인 소방위 이상 소방공무원중 임용권자가 임명한 사람
2.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4. 인사, 노무 또는 소방 관련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위원 중에서 임용권자가 위촉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본인에게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심사에서 회피해야 한다.

④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17조제5항을 준용한다.
제38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5.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순직공무원 또는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서 임용권자가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법 제17조 단서에 따른 특별승진대상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순직공무원 또는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서 임용권자가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41조의2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38조제4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된 사람을 특별승진심사위원회에서 특별승진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거나 제38조제1항제5호 및 같은조 제2항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게 된 경우, 임용권자는 특별승진임용을 취소해야 한다.

제42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8조제1항제5호 및 같은조 제2항의 특별유공자에 대한 특별승진심사는 소방청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제42조제3항 중 “불구하고 특별승진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를 “따른 특별한 공적을 심사하기 위한 특별승진심사를 거쳐야 한다”로 하고, 같은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현장에서 발생한 공무 중의 부상으로 사망하여 사망경위가 명확하

고 뚜렷한 공적이 있어 특별승진임용의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임용권자가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승진임용할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특별승진심사를 거쳐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승진임용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1항제5호, 제2항, 제41조제3항, 제42조제1항, 제2항,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특별승진사유가 발생한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제3조(보통승진심사위원회 구성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특별승진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8조의2(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의 특례) ①제18조에도 불구하고 제38조제1항제5호 및 같은조 제2항에 따른 특별승진대상자에 대하여 심사를 하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과반수를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u> <u>1. 승진심사대상자보다 상위계급인 소방위 이상 소방공무원 중 임용권자가 임명한 사람</u> <u>2.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u> <u>3.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u> <u>4. 인사, 노무 또는 소방 관련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u> <u>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위원</u>

제38조(특별유공자의 특별승진)

①법 제17조에 따른 특별승진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공무원으로 한다.

1. ~ 4. (생략)

5. 순직한 경우: 천재·지변·화재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현장에서 직무수행 중 사망하였거나 부상을 입어 사망한 사람

②법 제17조 단서에 따른 특별승진대상자는 천재·지변·화재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에 있어서 위험을 무릅쓰고 헌신 분투하여 현저한 공을 세우고 사망하였거나 부상을 입어

중에서 임용권자가 위촉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본인에게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심사에서 회피해야 한다.

④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17조제5항을 준용한다.

제38조(특별유공자의 특별승진)

①-----

--.

1. ~ 4. (현행과 같음)

5.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순직공무원 또는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서 임용권자가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법 제17조 단서에 따른 특별승진대상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순직공무원 또는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서 임용권자가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망한 사람 또는 직무수행 중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공을 세우고 사망하였거나 부상을 입어 사망한 사람으로 한다.

③ ~ ⑤ (생략)

제41조의2(특별승진의 제한 및 취소) ①·② (생략)

<신설>

제42조(특별승진심사) ①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소방공무원, 소방본부장 및 지방소방학교장의 특별승진심사는 소방청 중앙승진심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단서 신설>

② (생략)

③ 제38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사람으로 한다.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41조의2(특별승진의 제한 및 취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38조제4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된 사람을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특별승진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거나 제38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게 된 경우, 임용권자는 특별승진임용을 취소해야 한다.

제42조(특별승진심사) ① -----

-----.

다만, 제38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특별유공자에 대한 특별승진심사는 소방청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

제2항에 따른 특별승진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특별승진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신 설>

④ (생 략)

----- 따른 특별한 공적을 심사하기 위한 특별승진심사를 거쳐야 한다.

④ 현장에서 발생한 공무 중의 부상으로 사망하여 사망경위가 명확하고 뚜렷한 공적이 있어 특별승진임용의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임용권자가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승진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특별승진심사를 거쳐야 한다.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소방청 운영지원과	
연 락 처	(044) 205 - 7042